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04
----------	-------

발의연월일 : 2025. 8. 18.

발 의 자 : 임호선 · 정준호 · 임미애
박정현 · 안도걸 · 위성곤
김한규 · 윤준병 · 장종태
김문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보전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어장환경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어장환경 조사는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하는 어장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조사 항목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어업인 입장에서 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태조사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현행법에 따른 어장환경 조사는 어장관리 기본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관리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이 있음.

이에 어장환경 조사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사 결과를 어장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어장환경 조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내용과”를 “주기 및”으로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장의 분포·면적 등 현황
2. 어업권·양식업권 현황
3. 어장의 불법임대 및 불법 구조물 설치 등 어장 관리 현황
4. 어장의 수질과 퇴적물의 상태
5. 오염물질의 발생·유입 현황
6. 양식생물의 유해물질 오염 상태
7. 그 밖에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어장환경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汚染源)의 측정·조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어장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6조(어장환경의 조사) ① ----- ----- ----- ----- ----- ----- ----- --. <u>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u>1. 어장의 분포·면적 등 현황</u> <u>2. 어업권·양식업권 현황</u> <u>3. 어장의 불법임대 및 불법 구조물 설치 등 어장 관리 현황</u> <u>4. 어장의 수질과 퇴적물의 상태</u>

② (생략) <u><신설></u> <u><신설></u>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어장 환경의 조사 <u>내용과</u>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u>오염물질의 발생·유입 현황</u> 6. <u>양식생물의 유해물질 오염 상태</u> 7. <u>그 밖에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u>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 ⑤ <u>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⑥ -----<u>제3항</u>----- -----<u>주기 및</u>----- ----- -----.
---	--